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3
----------	-----

2019년 6월 20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5.21. 이정인 의원 외 15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5.24.

다. 상정 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19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로 제명을 변경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장애정도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애등급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됐음.

### 2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 기존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1~3등급은 ‘심한 장애’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장애정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향후 지방세·사용료 감면 또는 장애인 대상 각종 보조·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시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임.
- 따라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의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 역시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의 장애정도 기준을 적용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적법

하다고 판단됨.

3

**‘중증장애의원’을 ‘장애가 있는 의원’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제7조)**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줄여 칭하고 이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장애인복지법」 제6조).
- 현행 조례에서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정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 인력과 보조서비스를 제공 중임.
- 이와 관련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각종 법적 장치와 제도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증장애’ 단어를 ‘장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될 예정인바,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로 판단됨.

- 아울러 ‘중증장애’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례 제명을 비롯해 ‘중증장애’ 단어를 ‘장애’로 변경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3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채유미, 장상기,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김소양, 이병도, 박순규,  
이영실 의원 (16명)

## 1.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장애정도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를”을 “장애를”로, “중증장애에 해당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중증장애에”를 “장애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의원”을 각각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의회의원 중 <u>중증장애</u>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증장애의원</u>"이란 서울특 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u> <u>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u> <u>를 가진 의원</u>을 말한다.</p> <p>2. "<u>의정활동 보조인력</u>"이란 <u>중</u> <u>증장애의원</u>이 의정활동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u>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 ----- <u>장애</u>----- ----- ----- ----- ----- ----- ----- ----- -----</p> <p>제2조(정의) ----- ----- ----- 1. "<u>장애를 가진 의원</u>"----- ----- ----- ----- <u>장애</u> <u>의 정도가 심한</u> ----- ----- ----- 2. ----- <u>장</u> <u>애를 가진 의원</u>----- ----- -----</p>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 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생략)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

3. ----- 장애  
를 가진 의원-----

-----  
-----  
-----.

4. ----- 장애  
를 가진 의원-----

-----  
-----.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애를 가  
진 의원-----

-----  
-----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  
----- 장애를 가진 의원-----

-----  
-----.

② -----

-----  
-----

시설 또는 장비의 보장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장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  
-- 장애를 가진 의원-----  
-----.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  
장애에 -----  
-----.

② ----- 장애를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장애  
에 -----  
-----.

제6조(지원범위) ----- 장애를 가진 의원-----  
-----  
-----  
-----  
-----.

1. 장애를 가진 의원 -----  
-----  
-----
2. 장애를 가진 의원-----  
-----
3. 장애를 가진 의원-----  
-----  
-----

4.·5. (생략)

6.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6. ----- 장애를 가진 의원-----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

----- . --- 장애를 가진 의원-----

② -----

----- 장애를 가진 의원-----

----- .